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2012번
- 제 출 자 : 임규호 의원(찬성자 14명)
- 제 출 일 : 2024년 8월 12일
- 회 부 일 : 2024년 8월 14일

2. 제안이유

-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검사 IQ 70~85 사이에 속하면서, 인지, 정서, 사회적응이 힘든 사람을 말함. 사회성이 약하고 학습 능력이 늦어 입학을 거절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되기도 함.
- 전체 인구의 14%에 이르는데 비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있어 사회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음. 느린학습자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제때 치료하지 못해서 경제적 부담과 고통은 고스란히 느린학습자 가족과 당사자가 떠안고 있는 현실임.
- 경계선 지능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교육과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

- 제3조제2항 중 “재정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한다.
-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직업훈련 및 직무실습 지원, 취업 알선 등 자립 지원
 - 4. 경계선지능인 당사자 및 가족 자조모임 지원
- 제9조의 제목 “(공동사업 추진)”을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경계선지능”을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효과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를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5. 검토 의견

가. 개정안의 취지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와 비장애인의 경계에 있는 경계선지능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교육과 취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제안되었음.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u>	2. <u>“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을 말한다.</u>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u>재정적</u>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2. (생략) <u><신설></u> <u><신설></u> 3. ~ 7. (생략) 제9조(<u>공동사업 추진</u>) 시장은 <u>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u> 지원을 위하여 <u>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u> <u>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u>	② ----- ----- <u>행정적·재정적</u> -----. 제6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3. <u>경계선지능인 맞춤형 직업훈련 및 직무실습 지원, 취업알선 등 자립 지원</u> 4. <u>경계선지능인 당사자 및 가족 자조모임 지원</u> 5. ~ 9. (현행 제3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제9조(<u>협력체계 구축 등</u>) -- <u>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효과적</u>----- --- <u>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u> ----- -----.

나. 조문 내용별 검토

- 안 제2조제2호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을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평생교육’으로 정의하려는 것으로, 자치 조례의 경우 유사한 법령에 있는 용어 규정을 그대로 다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법령의 정의 규정에 따른다’고 표현한다는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근거한 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 다만, 대상만 바뀔 뿐 “평생교육”이라는 정의의 본질에는 변경이 없어,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을 별도로 정의할 필요는 없는지, 다양한 정의를 고려하여 경계선 지능인에게 필요한 평생교육의 정의를 정비할 필요는 없는지 살펴볼 여지는 있다고 보여짐.

〈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2022, 법제처) 중 발췌, 95p 〉

5) 자치조례에서 법령의 정의와 동일한 내용의 정의를 두는 경우의 표현방식

위임조례의 경우 상위법령의 용어정의를 당연히 그대로 적용되므로 해당 조례에서 다시 용어정의를 하지 않지만, 자치조례의 경우에는 유사한 법령에 있는 용어정의를 가져와 동일하게 정의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법령의 용어정의 규정을 그대로 다시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OO법」 제O조에 따른다.”고 표현한다.

〈 현행 조례와 평생교육법상 ‘평생교육’ 정의의 유사성 〉

- 현행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제2조제2호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
 -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 안 제3조제2항은 시장이 경계선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 하도록 시책을 수립·추진 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뿐 아니라 행정적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현행 조례 제3조제1항은 해석상 시장의 책무(시책의 수립·추진) 중 행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재정적 지원을 규정 하고 있는바, 제1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행정적 지원을 중복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안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수탁업체 : 사단법인 디티에스행복들고나, 이하 “지원센터”)가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직업훈련 및 직무실습 지원, 취업 알선 등 자립 지원과 경계선지능인 당사자 및 가족 자조모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상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 범위를 구체화하면서, 현재 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을 조례에 명시하여 경계선지능인 지원근거를 명확히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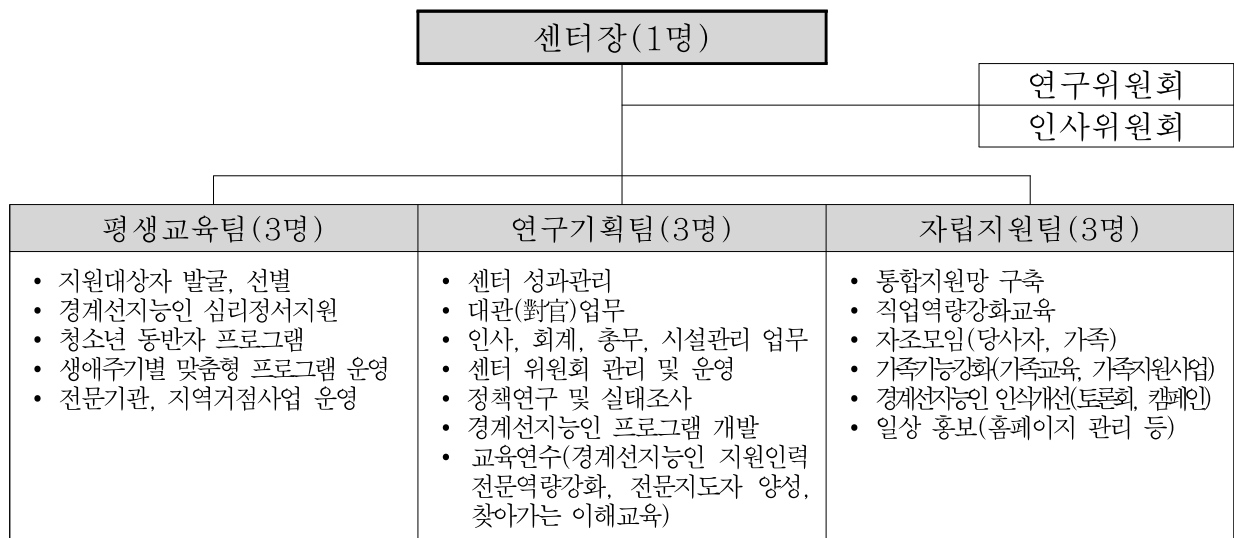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 현황 〉

- 위탁사무명 : 서울특별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관리 운영
- 소 재 지 : 중구 세종대로 21길 22 태성빌딩 403호
- 시설규모 : 임대면적 485,98㎡, 전용면적 337㎡
- 이용대상 : 경계선지능인 및 가족, 경계선지능인 관련 기관 종사자 등
- 위탁사무 내용
 - 지원대상자 발굴 및 선별, 상담 및 상담지원, 사례관리, 가족 상담
 -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교재·교구·매뉴얼 등 개발
 - 네트워크 구축사업, 교육 및 자립지원 사업, 인식개선 사업
 - 시설관리·운영 및 그에 수반되는 사무 전반
 -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민간위탁기간 : 2년 6개월(2024.7.1. ~ 2026.12.31.)
- 소요예산 : 2,079백만원('24년)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민간위탁 수탁현황 〉

- 2022.04.25. ~ 2024.06.30. : 신 규 / (사)디티에스행복들고나
- 2024.07.01. ~ 2026.12.31. : 재계약 / (사)디티에스행복들고나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조직 현황 〉



- 다만, 경계선지능인은 법령상 정상인의 범위에 있어, 복지차원에서 이들을 지원할 수 없어, 평생교육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바, 교육 대상자의 가족까지 지원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지원센터’의 주요한 기능과 역할을 규정하는 조항에 부수적·보조적 사업을 병기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현행 제6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안 제6조제2항제4호 자조모임)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별도의 조문신설이 필요한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안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관련 지원센터 추진 사업 〉

구분	안 제6조제2항	
	제3호 (경계선지능인 맞춤형 직업훈련 및 직무실습 지원, 취업 알선 등 자립 지원)	제4호 (경계선지능인 당사자 및 가족 자조모임 지원)
사업명	경계선지능 청년 직업역량개발 프로그램 운영	자조모임을 통한 성장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내용	○ 공통과정(사회성·정서 관련 프로그램, 자기관리, 의사소통, 직업소양교육 등) 과 직무과정(바리스타, 데이터라벨링 등 직무별 교육) 상·하반기별 주 1~2회 운영을 통해 사회로 진출하기 위한 개인역량 강화 ○ 바리스타 직무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사업단, 동대문종합복지관, 휘카페와 융합형 교육과정 시범 운영(2년차) ○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계를 통한 경계선지능인의 직업지원 및 일경험 지원 시범사업 협력 수행 ○ 데이터라벨링 직무교육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공모사업(2년차)	○ 당사자(6그룹), 가족(3그룹) 총 9개 자조모임 운영 ○ 경계선지능인 가족 간의 이해와 다양한 나눔을 통해 정서적 공감과 정보교환 등 친목을 통해 교류함 ○ 평생교육 및 직업, 가족교육 이후 자연스러운 모임 형성, 후속 활동 지원 확대
소요예산	61,578천원	15,000천원
기대효과	○ 당사자 중심의 진로탐색 및 직업훈련을 통한 역량 강화 ○ 경계선지능인 특성에 맞춘 직무개발 및 취업 연계	○ 자조모임 활동을 통한 정서적 지지 기반 마련과 사회적 역량 함양 ○ 당사자 및 가족 자조활동 지원을 통한 조력자 체계 구축

출처 : 2024년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사업계획서 재구성

- 안 제9조는 현행 조 제목 중 ‘공동사업 추진’을 ‘협력체계 구축 등’으로 개정하고,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효과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 자치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만을 임의조항에서 강행조항으로 개정하고, 공동사업은 행정기관의 재량으로 유지하려는 것으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 지원체계 구축 등에 의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협력체계 구축은 강행조항으로, 공동사업추진은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현행 조례 제9조의 내용(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는 다르게, 공동사업과는 별개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 현행 조례 제6조제2항의 각호에 따른 지원분야별 특화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각 사업별 효율성·효과성을 높이는 협력관계를 각각 구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되며,
 - 안 제9조의 “협력체계 구축”의 목적(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전 문 위 원	정 찬 일
입 법 조 사 관	임 재 빈